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70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임미애 · 이연희 · 김원이
허영 · 박해철 · 송옥주
윤준병 · 서미화 · 권향엽
위성곤 · 이용선 · 최민희
이재관 · 김 윤 · 민홍철
이광희 · 어기구 · 최혁진
정혜경 · 박지원 의원
(20인)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제2항에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현재 국가는 농업 세대 전환 촉진과 영농 규모화 지원 차원에서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다만, 농지은행 사업은 한정된 자원 등으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데 제약이 있어 청년농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중임

이에 반해, 사실상 농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상속이나 농업·농촌을 떠난 자가 가진 농지가 지속 증가하고, 방치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

하)은 오히려 농지가 쪼개지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공동영농, 친환경,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상속·이농 소유 농지 세분화를 예방함(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등).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 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를 허용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 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소유 농지 위탁·임대 시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23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를 “제6조제2항제1호·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이”로,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않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를 “소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는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 ② (생략)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 ----- 제7호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set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hes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page to provide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while practicing writing.

1. ~ 4. (현행과 같음)

4의2. -----

----- 제23조제1항 제7호 -----

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
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
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
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 7. (생략)

② (생략)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
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4의3. -----

제23조제1항제7호-----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

-----.

1. <u>제6조제2항제1호·제4호</u> 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는 경우	1. <u>제6조제2항제1호·제6호</u>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 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7. -----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u>사람으로서</u> 농업경영을 하 지 <u>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u> <u>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u> <u>한을 초과하여</u>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 ----- <u>사람이</u> ----- - <u>않고</u>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u>제7조제2항</u> <u>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u> <u>초과하여</u> <u>소유</u> 하고 있는 농지	나. ----- ----- <u>소유</u>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u>의 규정에 의해 농지를 임대하 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는 임차인 선정 및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 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해야 한다.</u>
--------------------	---